

자료작성을 위한 지자체 참고자료로서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음

# 생활SOC 투자 시설별 사업설명자료

2019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 목 차 -

## 경찰청 소관 사업

1. 국민편의중심 경찰 통합민원실 .....	1
--------------------------	---

##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2. 근로자건강보호(근로자건강센터) .....	1
3. 산재예방시설 건립 .....	2
4. 직장어린이집 지원 .....	2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3
6. 장애인직업능력개발(발달장애인훈련센터)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7. 어린이과학관 건립(국립법인과학관) .....	4
8. 어린이과학관 건립(국립중앙과학관) .....	4

## 교육부 소관 사업

9. 국립대학 시설확충 .....	4
1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	5
11.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5

## 국가보훈처 소관 사업

12. 상설전시관 전시내용교체(제6전시관) .....	5
-------------------------------	---

##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13.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	6
14.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6
15.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	6
16. 가로주택정비사업 .....	7
17. 노후산단 재생 지원사업(융자) .....	7
18. 도시재생사업지원 .....	8

19. 도시재생지원(융자) .....	8
20. 도시재생지원(출자) .....	8
21.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	9
22. 자율주택정비사업 .....	9
23. 주거지 주차장 .....	10
24. 성장촉진지역개발 .....	10
25. 영구임대출자(고령자복지주택) .....	10
26.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	11
27.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11
28. 위험도로 개선 .....	11
29. 도로구조물기능개선 .....	12
30. 건축안전(기존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	12
31. 도로유지보수 .....	12
32. 도로병목지점 개선 .....	13
33. 고속도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	13
34. 지하시설물 전산화 .....	13
3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포함) .....	14
36. 도시재생사업(세종포함) .....	14
37. 주거급여 지원 .....	15
38.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5종) .....	15
43.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15
44.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기타) .....	16
45.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	16
46. 주택성능보강 .....	1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4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종) .....	17
49. 농촌집 고쳐주기 .....	17
50.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취약지역개조) .....	18

## 문화재청 소관 사업

51. 문화재 안내판 등 관람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	18
-----------------------------------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5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4종) .....	19
56. 체육진흥시설지원(5종) .....	20
61. (공공·작은)도서관 건립(2종) .....	21
63.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	21
64.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	22
65.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	22
66.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	22
67.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꿈꾸는 예술터) .....	23
68.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	24
69.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2종) .....	24
71.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25
72.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25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73. 국공립 어린이집 .....	26
74. 어린이집 기능보강 .....	26
75. 다함께 돌봄 사업(돌봄센터 구축) .....	27
76.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27
77.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	28
78. 주민건강센터 확충(2종) .....	28
8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29
81. 권역재활병원 건립 .....	29
82. 공립 노인종합요양시설 확충 .....	30
83. 치매관리체계 구축(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	30
84. 노숙인 등 복지지원 .....	31
8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31
8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	31
87. 정신보건시설확충 .....	32
88.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32
89.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33

## 산림청 소관 사업

90. 도시바람길숲 조성 .....	33
9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33
92.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	34
93. 국립 자연휴양림조성 .....	34
94. 지자체 숲속야영장 .....	34
95. 국립 숲속야영장 .....	34
96.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	35
97.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	35
98. 유아숲체험원 조성 .....	35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

99.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35
100.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	36
10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36
102.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 .....	36
103. 일반광업육성지원(광산안전시설) .....	37
104.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	37
105. 가스안전관리 용자지원사업 .....	38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10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38
107.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39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

10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39
109.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40
110.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	40

##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111.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미래벨트 조성 .....	41
112. 어촌뉴딜300(2종) .....	41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

114.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1
115.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2
116.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2
117.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2
118.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42
119.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	43
120.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	43
121. 복합편의시설 건립 .....	43

##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122.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	43
123.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	44
124. 위험도로 구조개선 .....	44
125.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	44
126. 접경권 발전지원사업(2종) .....	45
128.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45
129.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45

## 환경부 소관 사업

130.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46
131.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	46
132.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46
133.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47
134.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 .....	47
13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48
136.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 및 정비 .....	48
137.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시설 설치 .....	48
138.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49
13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49
140.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및 정비 .....	40

141. 자연학습장 정비 .....	50
142. 생활자원회수센터 .....	50
143. 환경개선자금융자 .....	50
14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51

1

경찰청

국민편의중심 경찰 통합민원실

(경찰청, 감사관실)

- 사업목적·내용 : 행정 편의적이고 제한된 민원업무처리만 가능한 現 민원실을 '국민친화적 통합·개방형 구조'로 변경,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원근거 :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 제한없음
- 시행주체 : 경찰청

2

고용부

근로자건강보호(근로자건강센터)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사업목적·내용)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기초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원조건) 국비 100%
- (지원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지원대상 : 50인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용부 산재예방시설 건립**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사업내용)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 개선 및 확충
- (지원조건) 국비 1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지원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 (지원대상) 산업현장 종사자 및 학생 등 예비산업인력

**4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실, 여성고용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구분	기준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의 경우 대기업 포함 가능)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시설개보수비(1억원)	
	공동		5미만		10억원
			5이상		20억원
대규모 기업 (일반)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공동		6억원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제 26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35조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위탁)

**5 고용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사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재해감소에 기여
- 지원조건 : 시스템 비계 등의 추락방지 안전설비의 임대·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보조지원
  - \*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60% 지원
- 지원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4
- 지원대상 :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시행주체 : 고용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령사회인력정책국, 장애인고용과)

- 사업목적·내용 : 다른 장애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및 소득향상 기대
- 지원조건 : 출연 100%
- 지원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 지원대상 : 15세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 시행주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과기부 어린이과학관 건립 (국립법인과학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문화과)

-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의 과학 상상력·창의력 함양을 위해 어린이 특성에 맞춘 과학놀이·체험 공간 조성
- 지원조건 : 출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5)
- 지원대상 : 국립과학관법인(대구, 광주, 부산)
- 시행주체 : 국립과학관법인(대구, 광주, 부산)

**8 과기부 어린이과학관 건립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의 과학 상상력·창의력 함양을 위해 어린이 특성에 맞춘 과학놀이·체험 공간 조성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원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국립중앙과학관
- 시행주체 : 국립중앙과학관

**9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 사업목적·내용 : 지진·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39개 국립대학의 내진 성능 미 확보 건물은 내진보강 실시, 석면마감재 교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7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지원대상 / 시행주체 : 국립대학 39교

**10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 사업목적·내용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1개 국립부설학교 등의 노후 시설 개선,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실시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등
- 지원대상 / 시행주체 : 국립부설(특수)학교 41교

**11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교육복지정책국, 방과후돌봄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초등돌봄을 확대하기 위하여 돌봄교실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 지원  
- 산출내역 : 30백만 원(1실당) × 700실 = 21,000백만 원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근거 : 국정과제(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시행주체 : 시·도교육청(학교)

**12 국가보훈처 상설전시관 전시내용교체(제6전시관)**

(보훈선양국, 현충시설과)

- 사업내용 : 독립기념관 상설전시관(제6전시관) 전시내용 교체
- 지원조건 : 국고 100%지원(자본보조 93%, 경상보조 7%)
- 지원근거 : 독립기념관법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 시행주체 : 독립기념관

**13 국토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혁신도시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문화·체육·보육 등 복합시설) 건립(10개소)
- 지원조건 : '18~'21년까지 혁신도시별 100억 한도 정액(국비 최대 50%)  
\* 공동 혁신도시인 광주·전남의 경우 190억 한도
- 지원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10호
- 지원대상 :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1개소씩 (총 10개소)
- 시행주체 : 혁신도시 지자체

**14 국토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 사업목적·내용 : 지자체 및 112, 119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도시관리 효율화 및 도시 안전망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지방비 50% 매칭)
- 지원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5 국토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 사업목적·내용 :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연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50% 매칭
- 지원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6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 사업목적·내용 :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면적 1만㎡ 미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지자체·주민 주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단기간에 사업효과 가시화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이내(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시 70%)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조합·공공기관 등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17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 지원사업(융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투자·융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원조건 : 노후산단재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 실수요 유형에 맞게 융자지원
  - (복합개발형)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사업기간내 지원  
\* 총사업비의 융자 50%(年 2.0%, 변동금리)
  - (기반시설형) 총 사업비 70% 범위에서 사업기간내 지원  
\* 총사업비의 융자 70%(年 1.5%, 변동금리)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준공·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시행주체 : 복합개발형(산단재생리츠 민간 지자체 IH(지방공) 등 산단재생사업 시행자)  
기반시설형(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18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역주민·지자체 등 도시재생교육,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도시재생 부동산시장 관리,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관리
- 지원조건 : 직접지원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19 국토부 도시재생지원(융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사업목적·내용 :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20 국토부 도시재생지원(출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사업목적·내용 : 쇠퇴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자 지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도시재생 뉴딜리츠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21 국토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 사업목적·내용 : 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코워킹 시설,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임대상가 등 구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임대상가는 80%까지) 年 1.5% 융자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22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 사업목적·내용 :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한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재생 뉴딜」 공약의 효과 제고
- \* 노후·불량 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이내(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시 70%)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
- 지원대상 : 토지등소유자·공공기관 등
- 시행주체 : 지원대상과 동일

**23 국토부 주거지 주차장**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 사업목적 : 지역특성 및 주차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 조성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주차환경개선 도모
- 지원조건 : 지출한도 내에서 **시·도별 자율편성\***(국비보조 50%)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4 국토부 성장촉진지역개발**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
- 지원조건 : 국비 100%(시·군 포괄보조금)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지원대상 :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 시행주체 : 지자체

**25 국토부 영구임대출자(고령자복지주택)**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총괄과)

- 사업목적·내용 : 주거약자인 65세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공급
- 지원조건 : (지원단가) 개소당 54.6억원, (지원율) 50%
- 지원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
- 시행주체 : LH공사 및 지자체

**26 국토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지원과)

- 사업목적·내용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하여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50년 임대주택에 대한 노후시설 기능 개선
- 지원조건 : 사업시행자와 국고 매칭 시행  
\* LH 출자(50%), 지자체 보조(서울 30%, 기타 50%)
- 지원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 지원대상 : 영구·50년 임대주택 임차인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27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국, 첨단도로안전과)

- 사업내용 : 사고 잦은 곳 개선, 보도 설치, 횡단보도 조명시설 정비, 방호울타리 보강 등 국도 상의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규칙
- 지원대상 : 일반국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시·도, 위임국도)

**28 국토부 위험도로 개선**

(도로국, 첨단도로안전과)

- 사업내용 : 좁은 폭 또는 급커브 구간 등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규칙
- 지원대상 : 일반국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시·도, 위임국도)

**29 국토부 도로구조물기능개선**

(도로국, 첨단도로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상 교량 및 터널의 기능유지·개선(노후교량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교량 및 터널보수 등)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대상 : 일반국도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위임국도)

**30 국토부 건축안전(기존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 사업목적·내용 : 건축안전 모니터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등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보강비용의 67%(국비 및 지방비)
- 지원근거 : 보조율 33%, 지자체 33%, 기타 33%
- 지원대상 : 인명피해 위험도 높은 화재취약건축물
- 시행주체 : 국토부

**31 국토부 도로유지보수**

(도로국, 도로운영과)

- 사업목적 : 포장보수, 도로비탈면 정비, 배수시설 개선, 설해대책비 등 도로보수를 통한 도로기능 유지 및 수해 등 재해 예방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시·도, 위임국도)

**32 국토부 도로병목지점 개선**

(도로국, 첨단도로안전과)

- 사업내용 : 대규모 신설, 확장 사업이 아닌 운영 중인 도로의 병목지점 개선을 통해 단기간 소규모 투자로 교통정체 해소 및 안전 강화
- 지원조건 : 국비 100%
- 지원대상 : 일반국도
- 지원근거 :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규칙
- 시행주체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시·도, 위임국도)

**33 국토부 고속도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도로국, 도로정책과)

- (사업내용)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 39기(국비기준)를 구축
- (지원조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75억 지원(기당 7.5억원 국고지원)
- (지원근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세출),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지원대상) 수소차 이용객, 수소차의 미세먼지 정화기능에 따른 전국민 혜택
- (시행주체) 한국도로공사

**34 국토교통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 (사업내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예방 및 적기대응을 위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시스템 운영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국고보조율 : 市50%, 郡 60%), 직접수행
- (지원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9조(연구·개발 등), 제10조 (정부의 지원), 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지원대상) 지자체 ○ (시행주체) 국토교통부, 지자체

**35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제주포함)**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소규모 동네 단위의 주거환경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
-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및 도시활력 회복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추진
- 지원조건 :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 50% 우리동네 살리기 40~60%(서울시 40%, 광역시 50%, 광역도 60%)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36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세종포함)**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40~60%(서울시 40%, 광역시 50%, 광역도 60%)
- 지원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기초자치단체

**37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자가가구)에 주택수선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서울: 60%, 그 외: 80~90%)
- 지원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203만원)
- 시행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38 국토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승강장안전시설개량 등 5개)**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철도역 승강장 및 건널목 사고저감, 교통약자 편의제공, 철도주변 소음저감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을 통한 철도안전과 생활편의제공
- 지원조건 : 출연금(국비 100%)
- 지원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철도안전)
- 지원대상 : 일반철도 생활SOC 사업
- 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43 국토부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고속철도 구조물 보강 및 KTX안전강화대책('11.2)에 따라 안전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보
- 지원조건 : 출연금(국비 100%)
- 지원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철도안전)
- 지원대상 : 고속철도 1개 노선 692.8km
- 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44 국토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기타)**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노후 및 안전에 취약한 일반철도 시설을 적기 개량하여 철도운영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이용객 이용편의 제공
- 지원조건 : 출연금(국비 100%)
- 지원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철도안전)
- 지원대상 : 일반철도 89개 노선 3,421km 노후시설
- 시행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45 국토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노후공단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 지원대상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준공·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46 국토부 주택성능보강**

(국토도시실, 건축안전팀)

- 사업내용 :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을 저리로 융자**
- 지원조건 : 융자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 지원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지원대상 : 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 시행주체 : 기금수탁은행

**47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사업목적·내용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생활기반확충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지원대상 :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 시행주체 : 시장·군수

**49 농식품부 농촌집 고쳐주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사업목적·내용  
(목적)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집수리로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내용) 농촌지역 취약계층(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중보수 집수리
- 지원조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임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지원대상 : 읍·면 농촌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또는 무상임차 주택 소유자(무상임차의 경우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시행주체 : 다솜동지복지재단(농식품부 설립허가('07.11))

**50 농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취약지역개조)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사업목적·내용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비70%, 지방비30%(생활·위생 인프라, 안전은 국고 80%우대 지원)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40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역악한 취약지역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51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등 관람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국민에게 올바른 문화재 정보와 관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안이 어렵고 훼손된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무장애 관람환경 조성
- 지원조건 : 국가지정문화재 국비 70%, 시도지정문화재 국비 30%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
- 지원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52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국, 체육진흥과)

- 사업목적·내용
  -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충
  -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학교 및 산업 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근로자·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동 공간 확충
- 지원조건
  - 국민체육센터 : 지자체 자본보조, 정액지원

유 형	개소 당 지원액(1차년도 지원액)	
일반형	27~33억원(2억원)	* 2~3개년 분할 지원
장애인형	50억원(10억원)	
생활권 생활밀착형	30억원(10억원)	
생활권 장애인형	30~40억원(10억원)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지자체 자본보조, 정률/정액지원

유 형		개소 당 지원액	보조율
일반형	중대도시형	9억원 이내	30%
	소도시농촌형	4.8억원 이내	
	수영장형	30억원 이내(10억원)	* 2~3개년 분할 지원 (1차년도 지원액)
복합형	복합체육관형	50억원 이내(10억원)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 지자체 자본보조, 정액지원(10억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지원대상



- 국민체육센터 : 지방자치단체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 국민체육센터 : 지방자치단체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56 문체부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국, 체육진흥과, 최윤식)

- 사업목적·내용 :
  -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30%,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정액)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61 문체부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

- (사업내용)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지원률) 사업비 40%(부지매입비 제외) \* 농어촌 80%(최대 16억) 지원
-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작은도서관 조성>

- (사업내용)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 리모델링 및 자료구입비 등 지원
- (지원률) 사업비 50~70%(최대 98백만원) \* 농어촌·SOC 조성 등 70%
- (지원근거)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63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 (사업내용) 기존 문화시설, 유휴 시설 또는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
  - △예술 활동,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공간, △소규모 발표 등 다목적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 공간 구성
-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40%, 부동산 매입예산 제외)
- (지원근거)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64 문체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 사업목적·내용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4대 고도 중 하나인 익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기 위한 국립미륵사지유물 전시관 증·개축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및 제9조
- 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65 문체부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 사업목적·내용 :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전시·연구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중도선사시대 발굴 유물 관리를 위한 도·토기 소장품 중심의 수장고 설치
- 지원방식 : 직접 수행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및 제9조
- 시행주체 : 국립춘천박물관

**66 문체부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 (사업내용) 전통 국악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족한 공연연습장 건립
- (지원조건) 자체수행(국립국악원)
-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67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꿈꾸는 예술터)**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및 운영
  - \* 문화예술 창의력·감수성 교육, 학교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운영(지역 문화시설 대상 우수 콘텐츠 인력 개발·보급) 등

사업대상		운영	기대효과
학교연계	아동·청소년	학교교과 연계 교육	교실한계 극복, 감수성·창의력 제고
	교원·예술전문인력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 교수법 연수	(초)예술교과(음악,미술,창의적 체험)와 (중)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지역연계	지역주민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확일화된 강좌(실기교육) 탈피, 공간기반의 맞춤형 예술교육 체험
	지역 문화기반시설	지역거점 플랫폼 역할로 시설에 프로그램·인력 지원	지역 행사성 사업에서 탈피,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교육 특화

- (지원조건) 지자체 경상보조(지원율 50%)
  - \*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지원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26조
  - \*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학교교과 연계) 아동·청소년, 교원·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주민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운영주체 : 지자체 직영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 등



**68 문체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 사업목적·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준프로 및 아마추어 경기 개최가 가능한 상설 e스포츠 경기장(3개소) 구축 지원
- 지원근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이스포츠진흥법> 제8조(자금지원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식/수행기관 : 민간경상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대상 :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산업 진흥기관
- 사업기간 : '19년~'20년(2개년도 사업)
- 지원예산 : 1개소당 30억원 \* ('19) 22억원\*3개소 ('20) 8억원\*3개소  
※ 지자체와 50% 매칭으로 사업 추진(1개소당 총 60억원 소요)

**69 문체부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주요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을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로 VR 콘텐츠화
  - (문화자원 실감형 체험관 조성)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박물관 실감콘텐츠 향유인프라 구축
- 지원조건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문화자원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직접수행
- 지원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 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71 문체부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체육국 체육정책과 김해강주무관)

- 사업목적·내용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육역사·유물의 체계적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시와 정보제공 등으로 체육문화 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제 2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지원대상 : 일반국민
- 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72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체육국, 체육진흥과)

- 사업목적·내용 :
  - 공공체육시설 내 안전 위해 우려 시설, 노후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및 경기 관람 환경 개선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30%, 50%, 70%)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73** **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정책국, 공공보육팀)

- 사업목적·내용 :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고보조율 50%)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지원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74** **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사업목적·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75** **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돌봄센터 구축)**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 사업목적·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리모델링비: 국비 서울 30%, 지방 50%, 기자재비: 국비 100%)
-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등
  -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19.4.16) 이후에는 동법 제44조의2가 직접 적용
-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76**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 사업목적·내용 : 시설이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방과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서울 30%, 지방 50%)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
- 지원대상 : 연도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로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77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사업목적·내용 :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공공보건의료 강화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지방의료원), 국고보조율 100%(적십자병원)
- 지원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타 공공병원
- 시행주체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타 공공병원

78 보건복지부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보건지소 기능전환<sup>1)</sup> 및 '건강생활지원센터'<sup>2)</sup> 건립을 통한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22, 시군구당 1개소)
-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 거점** 기능 수행
- 1) 관련 세부사업명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특)**
- 2) 관련 세부사업명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洞 건강증진기금)**
- 지원조건 : 공모를 통한 선정평가(국비66.7%)
- 지원근거 : 「지역보건법」 제24조
- 지원대상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등
- 시행주체 : 지자체

80 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사업목적 :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재활의료 및 공공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건립**
- 사업내용 : 장애아동을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 지원 (~22, 병원 3개소, 센터 6개소)
- 지원조건 : 국비 50%
- 지원근거 : 국정과제(42-5), 대통령 공약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1 복지부

권역재활병원 건립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사업목적 : 권역별 재활병원 추가 건립지원을 통해 재활의료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불균형 해소
- 사업내용 : 권역 재활병원 3개소 건립
- 지원조건 : 국비 50%
- 사업규모 : 150병상 규모의 권역재활병원 3개소 건립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2 복지부 공립 노인종합요양시설 확충**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요양·재가 시설 인프라 구축,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대응한 요양시설의 지속적 확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보조율 50~80%)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3 복지부 치매관리체계 구축(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을 위해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원  
\* (치매안심병원)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전문병동, 신경과·정신과전문의 등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병원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보조율 50%)
- 지원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지원대상 :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및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 시행주체 :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

**84 복지부 노숙인 등 복지지원**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

- 사업목적·내용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 지원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 지원대상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85 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업목적·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안정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환경 개선을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 50%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시설이용자,
- 시행주체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86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50%)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 지원대상 : 기능보강을 희망하는 시설 또는 시설 설치 예정자(지자체, 법인, 개인)
- 시행주체 :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민간)

**87**    **복지부**    **정신보건시설확충**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및 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대 설치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50%, 부지매입예산 제외)
- 지원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82조(보조금 등) 제1항
- 지원대상 :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350개소 대상
- 시행주체 : 지자체

**88**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사회복지정책실,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돌봄(요양), 의료, 주거지원 등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수요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 **노인, 장애인** 등이 신체기능 불편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지원조건 : 국비 50%
- 지원근거 : 국정과제 43-6.

**43-6.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실시, 병원·시설 지역 연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충

- 지원대상 : 선도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수요자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기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

**89**    **복지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긴급상황센터, 자원관리과)

-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동의 구축 및 운영
- 지원조건 : 지자체자본보조, 국고 100%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지원대상 : 전 국민
- 시행주체 : (주관기관-호남권역) 광주광역시, (참여기관-호남권역) 조선대학교병원

**90**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조성**

(도시숲경관과, 예견희 사무관)

- 사업목적·내용 :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
- 지원조건 : 국비 50% 보조
- 지원근거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지원대상 :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91**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도시숲경관과)

- 사업목적·내용 : 노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도시재생사업지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흡착 및 인근 주택가 등 확산 억제
- 지원조건 : 국비 50% 보조
- 지원근거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지원대상 : 미세먼지 발생원(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지 등)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92 산림청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산림휴양등산과)

- 사업목적·내용 : 국민들의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한 자연휴양림 조성, 장애인 이용 지원을 위한 기존 객실의 리모델링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지원율 50%, 부지매입예산 제외)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의2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93 산림청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휴양등산과)

- 사업목적·내용 : 국민들의 산림휴양수요에 대응한 자연휴양림 조성, 장애인 이용 지원을 위한 기존 객실의 리모델링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국가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의2

**94 산림청 지자체 숲속야영장**

(산림휴양등산과)

- 사업목적·내용 :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증가하는 캠핑수요 등 다양화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지원율 50%, 부지매입예산 제외)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원대상·실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95 산림청 국립 숲속야영장**

(산림휴양등산과)

- 사업목적·내용 :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증가하는 캠핑수요 등 다양화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 지원
- 지원조건 : 국가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96 산림청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도시숲경관과)

- 사업목적·내용 : 생활권 주변의 국유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숲의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원조건 : 국가직접사업(국비 100%)
- 지원근거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지원대상 : 국유지 도시숲(산림공원 등)
- 시행주체 : 산림청(국유림관리소)

**97 산림청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

- (사업목적·내용) :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대중부권역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여가·문화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심형 온대 수목원 조성
  - \* 총사업비 1,447억원, 공사기간 '12~'20.5월, 면적 65ha(건축 연면적 2.2ha)
- 지원조건 : 국가직접사업
- 시행주체 : 산림청

**99 산업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 사업목적·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100세대 미만의 마을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00**    **산업부**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에너지지원실,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사업목적·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군 지역의 대표 읍·면에 LPG 탱크 및 배관망 방식 가스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지원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13개 군의 대표 읍·면 1개소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01**    **산업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지원실, 에너지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서민층 가구\*에서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지원대상 : LP가스 호스사용 서민층 가구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추진:한국가스안전공사)

**102**    **산업부**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

(에너지혁신정책관, 분산에너지과)

- 사업목적·내용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하는 경우, 투자비에 대한 융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자 중심(대기업 제외),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지원대상 : 시급한 30년이상 열수송관에 대한 개체를 우선 지원하고 취약한 20년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 병행 지원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103**    **산업부**    **일반광업육성지원(광산안전시설)**

(에너지지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탄광물산업과)

- 사업목적·내용 : 광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산안전시설·장비 구입비, 광산안전교육비, 광산안전위원회 운영 및 광산안전진단을 위한 광산안전관리지원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광산안전시설·장비구입비 60~70%, 광산안전교육비 80%, 광산안전관리지원비 70%,
- 지원근거
  - 광업법 제86조(광업발전을 위한 지원)
  - 석탄사업법 제26조(석탄사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및 동법 제27조(사업비의 용도)
- 지원대상 : 국내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한국광물자원공사
- 시행주체 : 한국광물자원공사

**104**    **산업부**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에너지혁신정책관, 분산에너지과)

- (사업목적)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전기사용 과다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아파트의 변압기 교체 비용 지원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 한전 55%, 기금 25%, 아파트 20% 지원
- (지원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2호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설치후 15년이상 경과, 세대당 3kW이하 변압기보유 아파트
- (시행주체) 한국전력공사

**105** **산업부** **가스안전관리(용자)**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사업목적·내용 :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용자) 추진으로 가스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90% 이내(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단, 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지원의 경우 1년 거치 3년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용자계정의 세입·세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 지원대상 : LPG충전·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106**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기반 조성을 위해 돌봄 공간 조성, 이웃 간 자녀돌봄 연계, 놀이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지원률 50%)
- 지원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제1항(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 모든 아동 및 보호자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10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과)

- (목적) 주로 정부지원 대상이던 다문화가족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실질적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공간** 지원
- **다문화가족간** 커뮤니티 공간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
  - ※ 결혼이민여성은 다가센터 방문 시 자녀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용공간 미비
  - ※ 다문화-비다문화가족간 교류가 장려되고 있으나, 실제 공동육아나눔터나 프로그램 운영 시 한국 가족들 사이에서 다문화가족이 위축되는 경향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사업기간) '19년 신규
- (사업규모) '21년까지 231개소 전국 설치
- (지원조건) 서울 30%, 지방 50%
- (사업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센터

**108**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생태계조성과)

- 사업목적·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창작활동 등 지원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
- 지원조건 : 민간보조(보조율 70% 또는 80% 이내)
- 지원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4조의2
- 지원대상 : 민간·공공기관 및 단체
- 시행주체 : 창업진흥원



**109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상생협력정책국, 시장상권과)

- 사업목적·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예산편성 : 시·도, 예산집행 : 시·군·구

**110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상생협력정책국, 시장상권과)

- 사업목적·내용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 등을 지원
  - (안전점검) 전통시장에 대해 분야별(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
  - (화재알림시설) 개별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노후전선정비)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전선정비 지원
- 지원조건
  - (안전점검) 전액(100%) 국비 지원
  - (화재알림시설) 점포당 80만원 한도(국비 70%, 민간 30%)
  - (노후전선정비) 시장당 3억원 한도(국비 50%, 지방비 30%, 민간 20%)
  - 화재알림시, 노후전선정비사업의 민간 부담금은 지자체와 분담 가능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 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1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미래벨트 조성**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실)

-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전과 연평균 100만명이상 관람객 수요에 맞춘 강의실 등 교육 공간 확보
- 지원조건 : 국비 100% (출연금)
- 지원근거 :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설립) / 국립해양박물관법 제 12조(재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정부출연금등의 지급)
- 지원대상 : 국립해양박물관
- 시행주체 : 국립해양박물관

**112 해수부 어촌뉴딜300**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사업내용 : 300개의 어촌과 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항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 재생 견인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등

**114 행복청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행정·문화·복지 등 주민 편익증진 및 커뮤니티공간 건립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5 행복청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집적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주민편익 증진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16 행복청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행정·문화·복지 등 주민 편익증진 및 커뮤니티공간 건립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7 행복청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집적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주민편익 증진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18 행복청 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집적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주민편익 증진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19 행복청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0 행복청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

- 사업목적·내용 : 복지·보건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 수 있도록 사회 복지·보건시설 등을 통합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21 행복청 복합편의시설 건립**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청사기획과)

- 사업목적·내용 : 정부세종청사 기능개선 및 직원, 방문객 등의 편의를 위한 청사 부대·편의시설 건립(주차장, 문화, 체육시설)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비 100%)
- 지원근거 : 행복도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시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2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사업목적·내용 :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23** **행안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사업내용)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지원률 50%)
- (지원근거) 교통안전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24**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균형발전과)

- (사업목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하여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지방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한 안전 확보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사업규모) 2차 중장기계획('14~'23) 사업 715개소, 국비 6,836억원  
※ 지자체 보조 비율(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기간) 16개 시·도 / '14~'23년
- (사업내용) 지방도로의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구조개선

**125** **행안부**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

- 사업목적·내용 : 접경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지에 문화·복지·체육 등 필요 서비스 시설을 집중 배치
- 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80%)
- 지원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 지원대상 : 접경지역 15개 시·군
- 시행주체 : 기초 지자체

**126**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균형발전과)

- 사업목적 : 국가 안보상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11~'30년) 행안부 소관사업 추진  
- 평화누리길(자전거길)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도보여행길) 조성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70%)
- 지원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
- 지원대상 : 접경지역 3개 시·도 및 시·군 / ○ 시행 : 지자체

**128**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국 재난경감과)

- 사업목적·내용 : 침수, 유실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예방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권 중심 재해위험 사전 예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원)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70조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29** **행안부**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국 재난경감과)

- 사업목적·내용 :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 비탈면을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급경사 사면 보수·보강 등 정비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원)
- 지원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30**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도서(섬)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수도시설(관정개발, 취·정수시설, 관로 등) 신규 설치 및 개량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근거 : 수도법 제75조(국고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 지원대상 : 유인도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제주도 본섬 제외)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31**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사업내용) 노후된 상수도(상수관망, 정수장) 시설을 정비하여 누수를 저감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상수관망 50%~70%\*, 정수장 50%)  
\* 경영개선평가에 따라 차등보조
- (지원근거)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132**    **환경부**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이호상 서기관)

- 사업목적·내용 : 관로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광역상수도의 적기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 지원조건 : 국고 30% 출자
- 지원근거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 지원대상/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134**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사업목적·내용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
-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보조(50%)
- 지원근거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 시행주체 : 환경부, 지자체

**135**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대책 위주의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에 따라 터널/역사/차량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지자체·민간 경상보조(30~40%)
- 지원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4조의6(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미세먼지(PM10) 등 유지기준을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미세먼지(PM2.5) 등 권고기준을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할 의무, 위반시 과태료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시철도기관
- 시행주체 : 환경부, 지자체

**136**    **환경부**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 및 정비**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공원과)

- 사업목적·내용 :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 지원조건 : 국고지원(국비 100%)
- 지원근거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주체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137**    **환경부**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시설 설치**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사업목적·내용 : 낙동강을 직접 취수하여 수돗물을 공급중인 지방 정수장에 미량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정수처리시설 설치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 수도법 제75조(국고보조 등)
- 지원대상 : 낙동강 본류를 직접 취수하는 지방정수장 운영 지자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138**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 사업목적·내용 :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차 충전소 구축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정액50%)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 지원대상 : 수소충전소 사업자
- 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사업

**139**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 사업목적·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정액)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 지원대상 : 일반국민, 산업체(충전기 사업자)
- 시행주체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지자체

**140**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및 정비**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공원과)

- 사업목적·내용 :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간접체험 기회 확대 및 올바른 공원문화 정착을 위한 탐방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 국고 지원(국비 100%)
- 지원근거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주체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141**    **환경부**    **자연학습장 정비**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공원과)

- 사업내용 : 미래세대 체험학습 강화를 위한 자연학습장 조성 및 정비
- 지원조건 : 국고지원(국비 100%)
- 지원근거 : 자연공원법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 시행주체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142**    **환경부**    **생활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정책국, 폐자원관리과)

- 사업목적·내용 :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재활용 선별장 신·증설 및 노후시설(수선별)을 현대화된 시설(자동 선별시설)로 교체
-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총사업비의 30~50%)  
※ 단, 민자사업일 경우 민간투자비는 제외하며, 50~70% 자본보조
- 지원근거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143**    **환경부**    **환경개선자금융자**

(환경경제정책관, 환경산업경제과)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조건) 이차보전 보조(이차보전을 2.00%)  
\* 시설분야 7년(3년까지 4년상환), 인출시점별 고정금리(19.1분기 지원금리 : 1.85%)
- (지원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14호
- (지원대상)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개선 중소·중견기업
- (시행주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4**    **환경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 사업목적·내용 :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의 공공수역 직유입 차단을 위해 저류시설 설치
- 지원조건 : 자치단체 보조(국비 70%)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 시행주체 : 자치단체
- 지원(설치)대상 : 면적 150만㎡이상, 폐수배출량 일정수준\*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200톤/일 이상, 폐수배출량이 5천톤/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1천톤/년 이상이거나 2kg/㎡ 이상 등

**145**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사업내용)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
- (지원조건) 가족센터 건립비용(공사비) 지원  
- 국조보조율 50%(복합화시)/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구 분	지원내용(국비)
가족센터 신축	○ 기본형(상담·교육·돌봄) 10억, 확장형(기본형+다목적 소통교류) 15억 이내 ※ 국고보조율 50%(보조율 40% + 인센티브 10%p), 최대 15억원 국비지원

- (지원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시행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끝 -